

산재보험 재심사 재결사례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조선공업(주) 환경보전부 사원이 휴게시간중 개인소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블록하부에 머리를 부딪혀 상병명 “경추부염좌”에 대한 요양을 신청한 경우

(93-45호 93. 3. 2. 취소)

재 결 서

사 건 명 : 요양급여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 ○
 주소 : 부산시 동구
 원 처 분 청 : 충무 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장 ○ ○
 주소 : 경남 장승포시
 대 리 인 성 명 : 김 ○ ○
 주소 : 부산시 동구
 피 재 근 로 자 성 명 : 장 ○ ○
 주소 : 경남 장승포시
 소속 : ○○조선공업 주식회사

주 문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2. 10. 20.자 “장○

○”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충무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2. 10. 20.자 피재근로자 “장○○”(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이 유

피재자는 ○○조선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9. 30. 15:05경 사업장내 업무수행중 휴식시간이 되어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개인소유 자전거를 타고 블록 밑에 가면서 동료에게

말을 하기 위해 머리를 돌리다가 블록하부에 머리를 부딪쳐 피재되자 상병명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을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사적행위가 허용된 휴식시간내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안전수칙 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피재자의 대리인인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피재자는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내고철쓰레기통을 찾은 작업도중 휴식시간이 되어 사업장내 설치된 블록 밑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자전거 통행중 블록에 부딪쳐 발생한 사고로 작업상 자전거를 계속 타야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휴식시간에 생긴 업무에 부수되는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상병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3. 1. 9. 김○○)
2. 답변서(1993. 1. 13. 원처분청)
3. 산재심사판 결정서 사본(1992. 12. 12)
4. 요양신청서 불승인통보 공문 사본(1992. 10. 21. 원처분청)
5. 요양결정 결의서 사본(1992. 10. 21. 원처분청)
6. 최초 요양신청서 사본(1992. 10. 10. 장○○)
7. 재해조사복명서 사본(1992. 10. 20. 원처분청)
8. 목격자 확인서 사본(1992. 10. 19. 한○○)
9. 안전사고 즉보 사본(1992. 10. 1. ○○조선공업)
10. 현장 감독자 사고보고서(1992. 10. 5. 한○○)
11. 경위서 사본(1992. 10. 1. 장○○)

12. 문답서 사본(1992. 10. 5. 한○○)

13. 자전거 수행시 안전수칙 사본

14.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참고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피재자는 ○○조선공업(주)에서 환경보전부 사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2. 9. 30. 15:05경 휴식시간에 휴식을 취할 목적으로 개인 소유 자전거를 타고 블록밑에 가면서 동료에게 말을 하기 위해 머리를 돌리다가 블록하부에 머리를 부딪쳐 상병명 “경추부 염좌”에 대하여 요양 신청한바 원처분청은 사적행위가 허용된 휴식시간내 사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로 안전수칙사항을 위반한 행위는 업무에 수반되는 필요적 행위로 볼 수 없고 시설물의 하자에 의한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 불승인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피재자가 자전거를 이용하여 사내 고철쓰레기통을 찾은 작업도중 휴식시간이 되어 사업장내 설치된 블록밑에서 휴식을 취하려고 자전거 통행중 블록에 부딪쳐 발생한 사고로 작업상 자전거를 계속 타야하는 업무의 특수성으로 보아 휴식시간에 생긴 업무에 부수된 행위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건을 면밀히 살피건대 업무상 사유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재해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업무수행상 자전거 통행이 업무에 수반된 행위라 하면 사업장내에서 휴식시간중 근로자 자의적인 자유행동이 허용되었고 또한 블록 하부 자전거 통행을 금지한 안전수칙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업장 시설관리물에서 청구인의 자해행위가 아닌 과실로 인하여 평소 업무수행상 이용하는 자전거로 휴식시간을 이용코자 통행중 피재되었다면 업무에 수반한 필요적, 합리적 행위로 인한 재해라고 판단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요양 불승인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유리공업(주) 근로자가 회사에서 실시한 부부동반 제주도 관광여행 도중 승마하는 과정에서 낙마하여 피재되어 요양을 신청한 경우

(93-89호 93. 3. 29. 취소)

재 결 서

이 유

사 건 명 : 요양급여
재심사 청구인 성명 : 김 ○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원 처 분 청 : 인천 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오 ○ ○
주소 : 인천시 남구
대 리 인 성 명 : 김 ○ ○
주소 : 인천시 남동구
피 재 근 로 자 성 명 : 오 ○ ○
주소 : 인천시 남구
소 속 : ○○유리공업 주식회사

피재자는 ○○유리공업(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회사측에서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로 주관 실시한 1992. 6. 2~6. 5까지 3박 4일간의 부부동반 제주도 관광여행에 참가하여 여행도중 승마하는 과정에서 낙마하여 부상을 입고 이에 대한 요양을 산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였던바 원처분청은 관광회사의 안내에 따라 승마장에 도착하였으나 요금도 비싸고 승마의사가 없는자도 있어 관광회사와 승마장측이 합의 전원이 승마할 경우 요금을 싸게 해주겠다고 하여 이에 동조 청구인은 순번에 따라 10번째로 승마하던중 낙마한 것으로 조랑말 승마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고, 동 승마요금도 회사측의 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관광여행중 재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자유행동이 허용된 상태에서 사적행위중 발행한 재해라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하였다.

주 문

인천지방노동청장이 1992. 8. 31.자 “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피재자는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김○○”(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인천지방노동청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2. 8. 31.자 피재근로자 “오○○”(이하 “피재자”라 한다)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요양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그러나 피재자의 대리인인 청구인은 다시 이결정에 불복하면서 피재자는 사업주가 강제한 관광여행에 참가하여 회사로부터 일정을 전적으로 위임받은 관광여행사의 인솔하에서 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승마장에 간것 역시 사업주의 지휘, 통제하에 있었다 할 것이고, 관광회사의 종용에 의해 참가자 28명 전원이 승마를 한 점 등 사적행위의 근거는 전혀 없으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피재자의 재해를 업무상의 재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3. 1. 18. 김○○)
2. 답변서(1993. 1. 21. 원처분청)
3. 산재심사판 결정서 사본(1992. 12. 5.)
4. 요양신청서 사본(1992. 8. 20. 오○○)
5. 요양불승인결정 통지 공문 사본(1992. 8. 31. 원처분청)
6. 요양결정 결의서 사본(1992. 10. 21. 원처분청)
7. 조사복명서 사본(1992. 8. 원처분청)
8. 문답서 사본(1992. 8. 25. 김○○)
9. 장기근속자 국내 관광여행의건 기안 및 시행공문 사본(○○유리공업)
10. 일정표 사본((주)○○관광)
11. 견적서 사본((주)○○관광)
12. 사고경위보고건 기안 사본(1992. 6. 8. ○○○유리공업(주))
13. 진단서 사본(1992. 6. 16. ○○세브란스 병원)
14. 사고일지
15. 각서 사본(○○승마장 대표)
16. 사고경위 진술 사본(1992. 6. 8. 김○○)
17.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참고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던 피재자는 ○○○유리공업(주)에서 근무하여 오다가 15년이상 장기근속자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회사가 주관한 1992. 6. 2부터 6. 5까지 3박 4일의 부부동반 관광여행에 참가하여 관광 3일째인 1992. 6. 4. 조식후에 10:30경 명산승마장에 도착 여행사측 가이드의 알선으로 동료들과 함께 승마하기로 하고 부부끼리 팀을 구성하여 10번째

팀으로 승마, 출발하려 하였으나 말의 심한 요동으로 마굿간의 지붕 서까래에 이마를 부딪치고 낙마하여 “1) 경추손상, 2) 사지부전마비, 3) 경추협착증”의 부상을 입었는바 첫째, 제주도 관광여행을 장기근속자 14명에 대한 예우의 일환으로 회사가 경비를 부담하고 (주)○○관광과 계약을 체결하여 부부동반으로 실시한 행사로서 동행사에 불참할 경우 정상근무에 임하고 근무를 하지 않으면 결근처리되는 노무관리상의 필요에 의한 행사였음은 청구인 및 원처분청 상호간에 다툼이 없고, 둘째, 원처분청은 관광도중 행한 “승마”를 사적행위로 인정하고 있고, 이는 당초 회사측에 제출된 일정표와는 달리 변경된 일정표에 의거 실시하게 된 것으로 요금도 개인부담으로 하였다고 하나 관광여행의 일정은 최초 계획된 일정표상 명시된 “일정은 현지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도 있다”는 조건과 같이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것이고, 재해당일로 변경된 일정표에 따라 여행사측의 안내로 산금부리등을 관광하기 위하여 가던중 ○○승마장에 도착, 1인당 11,000원인 요금을 6,000원으로 협의하는 등 가이드의 알선으로 참가자 전원이 승마를 하게된 것으로 어느정도의 자유의사가 허용되고, 비용을 개인이 부담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의 계약에 의거 관광을 안내한 여행사의 안내 또는 지시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승마장을 관광한 것도 아니고, 승마행위 역시 여행사측의 적극적인 알선과 대상자 전원의 동참으로 행한 점 및 관광의 목적 또는 일정을 벗어나 명백한 사적행위를 하였다고 할만한 근거도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이는 전체 관광일정의 한 부분, 즉 사업주 지배관리하에서 실시된 행사로 인정되므로 동 행사에 참가 그 과정에서 발생한 본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피재자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며 이는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